

[붙임 1] 공모(안)

진도군 공고 제 2024-966호

##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』사업자 재공고

진도군에서는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「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」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에 참여할 보험기관을 공개모집하니 참여를 원하는 보험기관에서는 제출서류를 구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11.

진도군수

### ■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
- 추진근거 : 「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8조
- 사업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지원대상 : 2025년 ~ 2027년 진도군 출생아
- 보험계약
  - 피보험자 : 출생아
  - 수익자 : 피보험자 부모(친권자)
  - 계약자 : 진도군수
- 보험료 : 월 25,000원 이내 / 1인
- 보험형태 : 청약 확정일로부터 5년 납입, 10년 보장, 만기환급형
- 보장내역 : 암, 상해, 질병, 수술, 입원 보장
- 보험료 환급
  - 만기환급금 : 수익자에게 환급
  - 해약환급금 : 사망 및 피보험자 타 지역 전출시 진도군에 환급

## ■ 사업자공모

- 공모기간 : 2024. 11. 20. ~ 2024. 11. 25. (6일간)
- 접수기간 : 2024. 11. 20.(수) 09:00 ~ 2024. 11. 26.(화) 18:00까지
- 자격요건
  - 보험업법 제4조(보험업의 허가)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% 이상인 보험회사 (본사에 한함)
  - 보험용역으로 참가 등록을 한 광주·전남지역 생명보험 취급 업체
- 제출서류
  - 보험회사 소개서 1부  
(재정상태, 사회환원사업, 유사업무 경험 등 포함)
  -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제안서 1부
  - 보장내역(약관) 1부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 / 진도군보건소(출산지원팀)

## ■ 심사 및 선정

- 심사일시 : 2024년 12월 4일(수) 14:00
- 사업자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일 경우 재공모 실시
- 재공모 후에도 1개일 경우, 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하여 결정
- 사업설명
  -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보험회사 소개 및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하며,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.

○ 선정기준

- 진도군 보건의료심의회 개최 결과 상위점수를 받은 보험기관으로 선정

○ 심사기준

- 재무상태(15점)
- 유사업무 수행경험 실적(5점)
-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지원 등 후원 가능(5점)
- 보험설계(15점)
- 사업수행 능력과 의지(10점)
- 보장내용의 적정성(30점)
- 협약 후 보험관리의 적절성(15점)
- 발표자 보고 내용(5점)

○ 선정업체 발표

- 2024. 12. 6. 이후 개별 통보

○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

**■ 유의사항**
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선정을 무효처리 합니다.
-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인상이 불가합니다.
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(☎ 061-540-6955)